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송재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8월12일

발 의 자 : 송재혁, 김제리, 신정호, 임종국,
채유미, 김생환, 송도호, 김평남,
김상진, 한기영, 이상훈, 우형찬,
이준형, 김기대, 이동현, 강동길,
이호대 의원 (17명)

1. 제안이유
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(대통령령)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의회위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외부강의 등 신고 규정 정비(안 제14조)

-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, 사전 신고만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.
-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의장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(안 제19조제3항)

- 행동강령 조례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이 그 신고사항에 대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항을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”을 “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외부강의 등을”을 “의원의 외부강의 등을”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자문하여야 한다”를 “자문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<u>외부강의 등을</u>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⑥ ~ ⑧ (생략)</p> <p>제19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<u>자문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	<p>----- <u>의원의 외부강의 등을</u>-----.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자문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